

식품의약품안전처 → 고성군

이송기관	식품의약품안전처 → 경상남도 고성군
이송일시	2024-04-12 14:47:53
이송자	김희 (043-719-)
이송사유	무신고 영업 등 사실관계 조사 후, 그에 따른 조치가 가능한 관할 지자체로 이송드립니다.

인쇄

답변 내용

답변일시

2024-04-22 14:34:50

처리결과
(답변내용)

1.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.

2.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(신청번호1AA-2404-0459663)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가. 민원요지: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장소에서 식품을 제조·판매하는 곳 신고 및 질의

나. 민원답변

1) 질의1), 질의 2)에 대하여

- 귀하의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2024. 4. 8., 4. 12. 고성을 동외로 125 소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고성지역자활센터 영업장을 현장 방문하였으며, 영업 신고 면적(4.8㎡) 외 영업장 면적을 임의로 확장하여 사용하였음에도 관할관청에 변경신고를 득하지 않고 영업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. 위반 사실 확인 후 즉시 영업행위를 못하게 조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 등 관련법 검토를 거쳐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(의견제출통지) 후 행정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. 또한 영업 신고 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하는 시간(몇일)은 현장 확인 후 얼마 후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것은 식품위생법 상 명확하게 규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2) 질의3)에 대하여

- [REDACTED]

3. 민원답변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열린민원과 위생담당자 정유정 주무관(☎055-670-2734)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.

첨부 파일

만족도 완료상세

민원관련 정책정보


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(약칭: 정보공개법 시행령)

[시행 2023. 11. 17.] [대통령령 제33866호, 2023. 11. 16., 일부개정]

행정안전부(정보공개과), 044-205-2407

제10조(관계 기관 및 부서 간의 협조) ① 정보공개 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 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후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분명히 밝혀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4. 5. 28.]